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167호

「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 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3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

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자연재해와 경기후퇴,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·축·수산업계, 문화·예술계 등 지원 및 국민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(23.8.3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받을 수 있는 선물범위가 확대되고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가액이 상향됨

이에,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공직자에 허용되는 선물 가액 범위 50% 상향, 물품 및 용역상품권 도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포함(안 별표1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감사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molit.go.kr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나.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정안	수정안	의 견

※ 보내실 곳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,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(정부세종청사 6동, 우편번호 30103)

전화 : 044-201-3088, 팩스 : 044-201-5506